

2025

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국내여행안내사 등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100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★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
도서명 : 관광진흥법

ISBN : 979-11-7393-013-3

발간일 : 2025-04-21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2,000원



관광진흥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6)

제2장 관광사업(p12)

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(p119)

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(p122)

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(p144)

제6장 보칙(p184)

제7장 벌칙(p191~198)

[약어]

-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
- 부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

-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- 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, 군, 자치구
- 시군구등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군구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- 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군구
- 시행자는 사업시행자
- 관광지등은 관광지, 관광단지
- 기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

-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
- 공사는 한국관광공사
-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
붉은색은 시행예정

[법 개정]

1) 25년 8월 28일 부터

- 유원시설은 테마파크
- 유원시설업은 테마파크업,
- 유원시설업자는 테마파크업자,
- 유기사설, 유기기구(이하 유기사설/기구)는 테마파크시설로 개정

2) 무장애 관광은 25년 10월 9일 시행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조, 2조

1. 목적

- 관광 여건 조성, 관광자원 개발

-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

2. 정의

1) 관광사업

- 관광객을 위해 운송, 숙박, 음식, 운동, 오락, 휴양, 용역 제공, 하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함

2) 관광사업자

- 관광사업 경영을 하기 등록, 허가, 지정(이하 등록등) 받거나 신고 한 자

3) 기획여행

- 여행업 경영자가 국외여행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,
- 목적지, 일정,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/숙박 등 서비스 내용, 요금 등을 미리 정하고,
- 참가자 모집

4) 회원

- 관광사업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관광사업자나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와 약정한 자

5) 소유자등

- 단독 소유나 공유로 관광사업 일부 시설을

관광사업자나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로부터
분양받은 자

6) 관광지

-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
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
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곳

7) 관광단지

-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/휴양을 위해
관광시설을 종합 개발하는 관광 거점
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곳

8) 민간개발자

-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, 상법/민법상 법인

9) 조성계획

- 관광지등 보호/이용 증진 위한 관광시설 조성/관리 계획

10) 지원시설

- 관광지등 관리/운영/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등 안팎 시설

1) 관광특구

-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
- 관광 활동 관련 법령 적용 배제/완화,

서비스, 안내 체계, 홍보 등 관광 여건 집중
구성 필요 지역으로

- 법에 따라 지정된 곳

2) 여행이용권

- 관광취약계층이 관광하도록 금액이나
수량이 기재(전자적/자기적 기록 포함)된 증표

3) 문화관광해설사

- 관광객의 이해, 감상, 체험 기회 제고를 위해
- 역사, 문화, 예술,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
전문적 해설

4) 무장애 관광

- 관광에 어려움 있는 자들이 물리적, 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

5) 기타

a) 의료관광

-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, 치료, 수술 등 의료서비스 받는 환자와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해 관광

b) 유원시설업자[테마파크업자]

- 유원시설업[테마파크업]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

제2장 관광사업

제1절 통칙

3~11조

1. 관광사업의 종류

- 카지노업 이외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

가. 여행업

- 여행자나 운송/숙박시설, 여행에 딸리는 시설 경영자 등을 위해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 대리, 여행 안내, 여행 편의 제공

1) 종합여행업

- 국내외 여행하는 내외국인 대상
- 사증 절차 대행 포함

2) 국내외여행업

-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
- 사증 절차 대행 포함

3) 국내여행업

- 국내 여행 내국인 대상

나. 관광숙박업

1) 호텔업

- 관광객에 숙박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거나,
- 부대시설(숙박에 딸리는 음식, 운동, 오락, 휴양, 공연, 연수 시설)을 함께 갖추어
이용하게 함

a) 관광호텔업

- 숙박시설, 부대시설 함께 갯춤

b) 수상관광호텔업

- 수상에 구조물,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숙박 시설을 갖추거나, 부대시설 함께 갯춤

c) 한국전통호텔업

- 한국전통 건축물에 숙박 시설을 갖추거나, 부대시설 함께 갯춤

d) 가족호텔업

- 가족단위 관광객 숙박 시설과 취사도구